

商法分科討議

司會 崔 基 元*

우리 商法은, 法人本質論을 中心으로 하는 獨佛系統의 商法과 우리 會社法에로 繼受된 英美系統의 商法으로 두 가지 조류가 있는데 이 兩理論의 調和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意見이 처음 提起되면서, 아울러 商去來法 中心의 商法概念에서는 不動產을 別途로 取扱하는 傾向이 있는데 이도 또한 商法改正問題와 關聯하여 考慮해 보아야 한다는 見解가 나왔다.

서울大 李泰魯 教授는, 商法에 關連된 여러 特別法令에 關한 研究의 必要性을 指摘하면서 특히 大陸法係의 稅法은 行政法에 包含되고 있으나 英美에서는 私法의 領域에 들어간다는 事實을 확인하였고, 또한 英美法上의 理事會制度를 導入하면서 任員制度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면서 業務執行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理事會와 業務執行自體의 機關으로서의 任員의 區別必要性을 強調했다.

鄭東潤 判事는, 株式會社法과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는 證券去來法에 있어 證券市場 管理規制의 面이 商法과의 關聯下에 實際적으로 研究되어야 한다는 點을 指摘하였다.

또한 司會를 보신 崔基元 教授는, 大學講義上의 隘路點으로 特定學說에 대한 通說 多數說 少數說의 混亂을 指摘하였고, 多國籍企業의 問題, 結合企業 특히 کن체른의 問題와, 資源開發을 위한 投資問題 등과 關連된 國際去來法問題가 現實적으로 商法改正 등에서 考慮되어야 할 課題임을 言及하였다.

그리고 株式의 大衆化의 前提로서 少數株主의 利益保護를 위한 經營規模의 公開 등의 制度的 必要性이 指摘되었고, 株主總會不存在判決以前에 代表者를 選出한 경우의 例外判例가 소개되었으며, 번거로운 現行 商業登記節次를 日本처럼 非訟事件節次法으로부터 商業登記法으로 獨立시킬 必要가 있음이 強調되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